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7457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redacted]시
피고, 피항소인	A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2. 선고 2015가단11305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0. 1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이유 중 각 "피고 A"를 각 "피고"로 고치고,

나. 제1심판결문 2쪽 제8행 중 "피고 주식회사 태헌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이라 한다)"로, 2쪽 제10행 이하의 각 "피고 회사"를 각 "[redacted]"로 각 고치고,

다. 제1심판결문 4쪽 제17행 내지 5쪽 제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기만 하면 그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업완료일인 준공검사일에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 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redacted]은 당초 피고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사업 승인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공유 지분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redacted]이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취득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나아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0. 9. 27.부터 20년간 원고가 자주 점유하여 2010. 9. 27.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 즉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는 준공 전까지 도로로 개설하고 지목변경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는 점, 그럼에도 [redacted]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로 그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외된 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인 1989.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접 주택의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사용승낙을 해주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인접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14, 25호증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기재 및 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우영

판사 정종건

판사 지은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부동산 목록

1. 시흥시 F 도로 53㎡
2. 시흥시 G 도로 257㎡
3. 시흥시 H 도로 76㎡
4. 시흥시 I 전 245㎡
5. 시흥시 J 임야 236㎡. 끝.